

[사 건 명] 행심 2019 - 8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5. 16.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9. 5.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9. 4. 23. 점심을 먹고 강당 계단 쪽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는 농구장 쪽으로 갔을 때, 소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학생이 웃고 있어서 청구인은 장난인 줄 알고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손과 발로 각각 1차례씩 때렸다.

나. 또한 소외 가해학생이 목발로 찔렸을 때 옷이 더러워진 피해학생이 조금 화난 것 같아서 눈치 보면서 끝났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친구 간 장난을 쳤던 것에 불과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가짜 행위로 피해학생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고(을 제1호 증 피해학생 병원 진단서), 모욕을 당했음에 그 대상자를 청구인 포함 6명으로 한정해서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였고,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사안임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영덩이를 손과 발로 각각 한 차례씩 가격한 행위를 인정했으며, 청구인의 보호자도 청구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에 동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높음3점), 지속성(없음0점), 고의성(보통2점), 반성정도(높음1점), 화해정도(보통2점), 선도가능성 등을 토대로 출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청구인 사실확인서 등 자료, 청구인의 학폭위 진술, 피청구인 대리인의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9. 4. 23. 점심시간에 이\*\*, 선\*\* 등 여러 명이 피해학생을 폭행(찌르거나 차는)하는 행위를 하자, 청구인도 같이 손과 발로 피해학생 엉덩이를 때린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웃고 있어서 장난인 줄 알고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손과 발로 각각 1차례씩 때렸다고 하나, 이러한 행위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 다수가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안으로,(이\*\* 목발로 수차 찌름, 선\*\* 발로 엉덩이 3차례 찎,

박\*\* 가슴 꼬집음, 박\*\* 목발로 찌름, 김\*\* 발로 엉덩이 2차례 참, 양\*\* 손으로 엉덩이 2대 때림)

학폭위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면서, 심각성 높음 3점, 지속성 없음 0점, 고의성 보통 2점, 반성정도 높음 1점, 화해정도 보통 2점 총 8점을 부여하고, 그 가해학생 경중에 따라 처분하며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의 이 사건 처분을 결정을 하였고, 피 청구인이 위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17조의 의거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